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 15일 의결을 거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동 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제 투명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부당한 경영간섭 및 탈법 행위에 대한 예시를 구체화하고, 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신고사건의 협의회 조정요청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예시로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생산 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을 관계없이 개입하여 제한하는 행위,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시공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

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등을 신설하였고, 탈법행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의 예시를 신설하였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신고사건의 협의회 조정요청범위를 제조·수리위탁에서는 현행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에서 2,500억원 미만의 분쟁으로, 건설위탁에서는 현행 원사업자가 토건 150위 미만인 경우의 분쟁에서 토건 100위 미만의 분쟁으로 확대하였으며, 과정금 부과대상이 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 30일, 전자거래 사업자가 자신의 가상상점(사이버몰)에서 각종 전자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전자거래가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거래인 점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방지 등

을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차원에서 OECD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용하였으며 전자거래 특성상 기업과 소비자의 대면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점(사이버몰)의 개설과 폐쇄가 일반 거래에 비해 쉽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동시에 시작 단계에 있는 국내 전자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거래에 있어서의 동

등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규정하였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 명시(제3조)

- 전자거래에 있어서도 다른 형태의 거래(일반 대면거래)와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보호가 보장되어야 함.

■ 전자거래 사업자가 판촉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전자거래규율법규를 소개하고, 전자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과 같은 특수 소비자층에 대해서는 판촉활동시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규정(제4조)

- 사이버몰 광고시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이버몰에 계약조건을 명시할 때에는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방문할부판매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등에관한법률 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규 준수
- 청소년 대상 광고시 대상연령을 고려하는 등 의 특별한 주의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해 필수정보 제공공차원에서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명시하여야 할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명시(제5조, 제6조)

-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 성명 등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의 명칭, 가격, 가격 이외의 추가부담 내역 등 재화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명시

■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명시(제7조)

-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
- 사업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

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의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명시

■ 피해 구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제8조, 제11조)

- 사업자는 인도한 재화가 주문내역과 다를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완전한 재화와 교환해 주어야 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이 적용됨을 명시
-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처리절차 및 불만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방안 명시(제12조)

-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되는 필수 정보에 한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약 절차 명시(제13조)

- 사업자는 또는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 명시(제14조)

- 사업자의 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분쟁해결이 있을 때는 국내법이 적용됨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11월 5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기초로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의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12월 29일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자산·자금 지원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심사지침 운영의 투명성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기업의 분리 사회사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 예외를 인정하였다.

개정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객의 신탁재산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 역외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 금융회사의 특정금 전신탁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 등 8가지의 새로운 부당내부거래 형태를 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둘째,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부터 분사화되어 설립된 회사가 시설자금의 상환, 연구기술인력활용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공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1년간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 지원행위의 유형(8개) 추가

1. 자금지원행위 유형 추가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에게 저리의 콜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사 사례) A투자신탁운용(주)는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98. 00. 00 ~ '98. 00. 00 기간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0000 억원의 콜자금을 계열사 A증권(주)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

2 자산지원행위 유형 추가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B생명은 '97. 00월 ~ 00월 기간동안 ○○은행 등 4개 은행에 0000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은행들은 B생명의 계열 3사의 사모사채를 고가로 인수함

-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조사 사례) A투자신탁운용(주)는 '98. 00월 2차례에 걸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의 기업어음 000억원을 고가로 매입함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조사 사례) C중공업(주)는 '98. 00. 00 C증권(주)등 5개 계열사가 설립한 역외펀드의 순자산가치가 부(-)임에도 동 펀드의 주식형연계채권 00000천불을 고가로 매입함

•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계열회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A카드(주), A캐피탈(주)는 '98. 00. 00~00. 00일 기간중 계열사 Y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 000억 원을 000종금(주)를 통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함

• 유상증자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C중공업(주) 등 4개사는 계열사인 X에 대한 지분율이 전혀 없고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정상적인 발행가격보다 훨씬 높음에도, '98. 00월 X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0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함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하는 경우

(조사 사례) D주식회사는 '99. 00. 00 신주인수권부사채 000억원을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주당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하여 특수관계인 000 등 6인에게 매각함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의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A생명보험(주)는 '98. 00. 00~'99. 00. 00 기간중 000은행에 특정금전신탁 000억원을 예치하고 000은행은 동 자금을 이용하여 A캐피탈(주)이 발행한 무보증사채 000억원을 저리로 인수함

■ 공기업의 분리 자회사에 대한 예외 인정

1. 예외인정 필요성

• 공기업의 경우 시설투자자금 상환, 연구기술인력 활용 등과 관련하여 분사화된 회사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존재

예) 분사화된 회사에 대한 지원 유형 : 분사 이전에 발생한 시설투자 관련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공기업과 자회사간에 불가피하게 자금차입관계 내지 보증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단기간에 분할이 용이하지 않은 연구인력, 기술인력 활용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행위가 있는 경우 등

•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분사화된 기업의 경우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

- 현행 지침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분사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심사 예외를 인정함

2. 예외인정 내용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분사화되어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1년) 심사 예외를 인정

-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 : 지원행위가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 기존 연구기술인력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어야 함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이 제정하였다.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의 건설분야 1개와 자동차, 전기, 기계, 전자, 조선, 섬유, 건축설

계, 소프트웨어개발, 건설자재, 엔지니어링활동의 제조분야 10개 등 총 11개 업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 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처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 '9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 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제1조).
- 계약이행 및 대금의 지급보증을 상호 의무화함(제7조).
- 목적물의 검사 기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성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의무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간주함(제17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하도급대금은 목적을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자가, 어음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각각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결재 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를 의무화함(제20조).
 - 선급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토록 함(제22조).
 - 물가변동 등의 조정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함(제15조).
-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직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21조).
- 계약의 해제·해지시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이행최고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 등의 행사를 억제함(제25조).

8개 전문자격사 2차 보수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일괄정리법”(약칭)이 '99년 2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기준이 폐지된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전문자격사간의 보수격차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부당한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8개 전문자격사 2차 보수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변호사, 행정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업무성질별, 기업규모별로 가격차별화가 나타나는데 단순한 업무의 경우 보수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업무는 보수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보수가 상승(결합재무제표의무화에 따른 준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과의 계속적 거래)한 반면, 세무사는 기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보수가 하락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 규모에 따라 보수수준의 인상·인하가 나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문자격사간의 경쟁을 통한 고객유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일부 자격사는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전문자격사별, 조사항목별 최고액과 최저액간의 편차가 1차 조사결과보다 확대되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항목별에 따라 행정사의 경우는 보통 20~30배, 수의사는 15~20배, 변호사는 10배, 기타 자격사는 3~5배까지 가격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차별화가 심해지면서 최고보수액이 상승함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문자격사 선택에 있어 유의할 점으로 첫째, 자격사에 대한 서비스 의뢰 전에 여러 명의 전문자격사와 미리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고가의 수임료(비용)를 요구할 때는 그만큼 경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를 판단할 것을 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전문자격서비스 보수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수기준 폐지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수기준 폐지 사실 및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대하여 PC 통신, 인터넷, 소비자 잡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자격사별 보수수준

변호사

총 개업변호사 3,821명중 248명에 대하여 실사례와 가까운 5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보수수준을 조사

하였다. 1차 조사와 조사방법이 바뀌어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 변호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보수 기준이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지만 금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변호사간의 경쟁으로 보수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례에 대한 설문에 있어서도 보수수준의 격차가 최대 15배까지 나는 등 변호사간의 보수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별 보수수준

■ 채권채무(민사)사건

- 300~5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응답이 4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임료는 56%가 일시불로 받으며 이중 대부분(85%)이 사건착수시에 받는다고 응답.
-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서울에서만 받음.

■ 손해배상(민사)사건

-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받는 등 보수의 폭이 넓은데, 300~500만원이 39%, 500~1,000만원이 36%를 각각 차지.
- 서울에서 1,000만원 이상을 받는 변호사가 18명(8%)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보수수준을 나타냄.

■ 폭행(형사)사건

- 300~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빈도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1,000만원을 받는 경우로 34%를 차지.
- 형사사건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서울에서만 나옴.

■ 교통사고(형사)사건

- 사건 수임시 받는 보수가 100~1,000만원 이상으로 다양한데, 300~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비율이 57%로 제일 큼.
- 일시불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한다는 응답이 63%이며 이를 모두가 사건 착수시에 받는다고 함.

■ 이혼(가사)사건

- 300~500만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다수(46%)인 가운데 100~300만원의 응답도 24%로 다른 사건에 비해 보수가 낮았음
- 한편, 1,0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도 서울에서 나와 보수수준의 격차가 큼을 알 수 있음.

공인회계사

조사항목별로 회계사간의 보수격차가 최고·최저 보수액간의 격차가 1차 조사 결과 1.1~5배에서 1.6~8배로 확대되었고, 보수수준은 업무성질별, 기업규모별로 다양화되었는데 단순 업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하락하였으나 복잡한 업무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보수수준이 상승하였다. 이는 대기업은 2000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다소 보수가 높더라도 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회계법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체 유치를 위한 회계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 개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기본 보수

- 자산총액 80~120억원 : 평균 1,031만원(1차 조사 : 1,038만원)
- 자산총액 500~1,000억원 : 평균 2,051만원(1차 조사 : 2,017만원)

■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감정·증명금액 10~50억원)

- 보수평균 : 118.1만원(1차 조사 : 105만원)

■ 원가계산(계산금액 100억원 이상)

- 보수평균 : 213.5만원(1차 조사 : 267만원)

1차 조사에 비해 최고보수액과 최저보수액간의 격차가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확대되어 서비스에 따른 가격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례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연간 수입금액 10~20억원 사업체)

- 최고 120만원, 최저 40만원(1차 조사 : 최고 100만원, 최저 45만원)

■ 불복처리대리 보수(이의신청·심판청구, 취소·경정가액 10억원 이상)

- 최고 10%, 최저 2%(1차 조사 : 최고 4%, 최저 3%)

세무사

전반적인 보수수준의 변화는 업무의 성격과 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는데, 자료의 단순한 분석·정리업무와 대기업의 보수는 하락한 반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기장대행 보수

- 연간 수입금액 1억원미만의 기업 : 평균 8.7만원(1차 조사: 8.0만원)

- 연간 수입금액 30~40억원의 기업 : 평균 28.9만원(1차 조사: 30.0만원)

■ 불복처리대리 보수

- 이의신청·심판청구(취소·경정금액 10억원 이상)
 - 평균 보수율 4.6%(1차 조사 3.7%)
- 단순한 불복청구(취소·경정금액 10억원 이상)
 - 평균 보수율 1.5%(1차 조사 1.8%)

공인노무사

최고보수액이 크게 인상되어 노무사간의 보수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일부에서는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차별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비현실적인 일부 항목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컨설팅 회사)와 비교하여 가격인상이 발생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 임금대장(50인 기준) 대행 : 최고 100만원(1차 조사 : 20만원)

1차 조사에 비해 조사항목별로 보수수준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등 업무성질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건강진단결과서(50인 기준) 대행 : 평균 8.8만원(1차 조사 : 9.5만원)
- 노무관리진단(100인 기준) : 평균 213.3만원(1차 조사 130만원)

행정사

행정사간의 보수수준 차이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 20~30배로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보수기준 폐지 후 행정사 업무의 가격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반영하며, 한편으로는 행정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유의하여 행정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심지어 행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일부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업소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 문안불필요 서류작성(1건) : 최고 5만원, 최저 100원
- 단체·조합·법인설립 허가신청 : 취급 안함 44.9%
- 도면작성 : 취급 안함 57.5%

하도급법 위반전력 사업자에 대한 별점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9년 12월 31일 현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과거 3년간의 별점을 삭제키로 하였다.

이번 제재해제조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수혜대상업체는 총 835개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대폭 확대(2만여 업체 대상)하여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하도급법 위반전력 별점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법 위반시 별점 부과 기준

- 경고 1점, 시정명령 2점, 고발 2.5점

■ 별점관리 내용

-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거 3년간 누적 별점이 4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함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감점(1~3점)을 받게 되어 입찰시 불이익을 받음.
- 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별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영업정지 요청

■ '99. 12. 31. 현재 별점부과업체 수

2점 미만	2~4점 미만	4점 이상	계
584개	163개	88개	835개

사업구조조정 통합법인 및 SOC민자사업법인에 대한 계열편입요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99. 12. 31. 공포)하여 그룹간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통합하여 신설된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영위하는 민자사업진담법인에 대한 계열편입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통합하는 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가 2

인 이상(공동출자자가 있는 경우)인 경우 종전에는 공동출자자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모두 편입하여 웠으나 앞으로는 어느 출자자측도 임원구성 등의 측면에서 당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이 20% 이상 출자한 민간투자 사업법인의 경우 종

전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거나 받은 것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자자가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개 그룹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참여한 통합법인이나 SOC법인의 경우에도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구조 조정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 및 대우의 계열사로 공동편입되어 있던 한국철도차량(주)의 경우 2000년 1월 3일자로 양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으며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이 각각 1/3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경우에도 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보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당해

SOC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SOC사업의 추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자원공사가 20%를, 현대건설 등이 52%를 출자한 경인운하(주)의 경우 현재 현대 계열에서 제외된 상태로서 종전 규정에서는 채무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자자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00년 3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SOC법인의 경우에도 출자자가 채무보증한 경우에 대해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과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9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12월, 듀오정보(주), (주)선우 등 9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미팅이전 탈회시에는 회비의 50%를 반환하고 한번이라도 미팅이 개시된 후 탈회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전혀 환급해주지 않는 조항, 회원이 미팅에 불참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행동을 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면서 회비를 전혀 환급해주지 않는 조항,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 등의 사유로 탈회하는 경우 회비환급이 안 되는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의결하고 이를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하였다.

이번 조사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결혼 목적의 남녀를 회원으로 모집해 성격, 취미, 직업, 배우자상 등 회원의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컴퓨터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이나 인터넷 화상자료를 통해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서 만남의 기회를 일정 횟수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결혼정보회사가 신종 업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업자의 각종 광고를 믿고 가입 하였다가 바로 탈회를 요청하거나 미팅 상대방이 회사가 제공한 프로필과 달라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탈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회비환급이 안

되는 약관조항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증가하자 공정한 약관사용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총 9개 업체로 두 오정보(주), (주)좋은만남 선우, (주)피어리, (주)에코러스, (주)듀비스, (주)넷프리월드, 쌍용큐피드, 미래정보서비스(주), 행복출발이며, 특히 '99년 11월 20일자로 두오정보(주)의 회원수·성혼율·결혼커플수 1위의 광고에 대해 부당광고 경고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번 규모 및 인지도가 큰 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회원 가입 후 고객

의 사정으로 즉시 탈회를 해야 하거나,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로 더이상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탈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회원 가입 후 다른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탈회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탈회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함으로써 미리 낸 회비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전한 결혼정보제공 관련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 및 결혼정보사업자들의 회원가입약관의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불공정조항의 대표적 유형 및 무효취지 ◆

약관조항	무효취지
<p>■ 과다한 위약금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필 제공 이전의 탈회시는 회비의 70%, 미팅 이전의 탈회시는 회비의 50%를 회원에게 반환 하며, 미팅개시 이후에는 회비환불은 없음 <p>※ 9개 사업자 모두 해당됨 (사업자별로 각 비율은 조금씩 차이 있음) 예: (주)선우-회원가입 후 7일 이후에는 회비환불 안됨</p>	<p>■ 약관으로 각 단계별 위약금을 정할 때는 회원이 중도 탈회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실손해 즉 신원조회비, 카드수수료, 프로필제공비용(전화비 등), 기타 정보제공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프로필 제공 이전 탈회는 회원가입 후 바로 탈회하는 것이고, 미팅 이전 탈회는 실질적인 만남 없이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받은 경우임에도 70%, 50%까지만 반환하는 것은 과다한 위약금 부과이고 미팅개시 이후 탈회시 회비 불반환은 실제 만난 고객이 회사가 제공한 상대방 프로필 내용과 다른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일단 미팅 후에는 회비를 불반환하겠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p>
<p>■ 자격상실시 회비불반환 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소한 트집으로 성의없이 교제에 임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장소에 불참하여 상대회원으로부터 불만이 2회 이상 접수되는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회비환불은 전혀 안됨 <p>※ 해당사업자(4개): (주)선우, 듀비스, 미래정보서비스(주), (주)넷프리월드</p>	<p>■ 회원의 귀책사유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일 반적으로 실손해액을 감안하여 위약금을 산정한 후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점, 불성실한 사람소개 등 회사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서 회비 전부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p>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 29일, 경실련 ('99. 9. 9)과 서울YMCA ('99. 12. 23)가 각각 신고한 국내 7개 신용카드 회사인 비씨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 엘지캐피탈, 삼성카드,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동양카드 및 협회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가맹점수수료율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담합을 주도한 협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63,300천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가 추진되면서 각 업종 종사자들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요구가 본격화되자 이에 공동 대응하여 요율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수입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한국여신전

문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라 함)에서 회합을 갖고 '99년 3월 24일, 8월 12일, 8월 31일 3차에 걸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조정안을 공동 결정하였다.

이같은 수수료율 공동결정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 및 서비스 등 기타 거래조건의 경쟁을 회피하고 요율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수입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며, 여신협회가 수수료율 공동결정에 관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간 적정하고 실질적인 요율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씨	국민	외환	삼성	엘지	다이너스	동양
시행일	'99. 4. 1	'99. 5. 3	'99. 5. 1	'99. 5. 26	'99. 5. 24	'99. 6. 1	'99. 4. 8
실행업종수	19	12	17	6	10	20	9

성라공원 조성공사 입찰관련 10개사의 부당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2월 24일, 『성라공원 조성공사』 입찰건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 모두가 연고권 주장업체들간 자율조정의 시간을 주기 위해 1차 입찰을 유찰시킨 행위에 대하여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조치하였다.

동부건설(주), (주)한진중공업, 에스케이건설(주), 코오롱건설(주), 현대건설(주), 엘지건설(주), 경남기업(주), 대림산업(주), 삼환기업(주) 등 10개 업체들이 경기도 고양시가 '99년 4월 8일(목) 11시에 실시한 본건 입찰에 불참(4개 업체) 또는 입찰장에 늦게 도착(6개 업체)함으로써 동 입찰을 자동유찰시킨 것은

서로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건설사들 가운데 입찰에 불참한 에스케이건설 등 4개사 모두 본건 입찰등록을 마감일('99. 4. 7) 또는 그 하루 전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당일 아침에 갑자기 견적금액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입찰불참결정을 하였다거나 입찰내역서 준비가 되지 않아 불참하였다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진술한 점, 입찰내역서 준비지체 등을 이유로 입찰장에 10~30분정도 늦게 도착하였다는 동부건설 등 6개 업체들의 주장 역시 콜레터 배포 등 본건 공사의 수주에 적극적이었던 업체가 입찰내역서 준비지체로 늦게 도착하였다라는 것은 통상 1시간 내지 30분전 까지 입찰장에 도착하는 입찰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더구나 본건 발주처의 입찰 담당공무원이 1차 입찰 당일 입찰시각인 11시경 입찰장 밖에서 본건 입찰관계자 약 20명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11시 5분경 입찰참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하지 않아 결국 11시 15분경에 유찰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6개 업체 모두가 입찰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본건 재입찰('99. 4. 20)에서는 피심인 모두가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1차 입찰시 준비한 내역서의 금액대로 응찰한 점, 피심인들 중 동부건설 등 일부업체가 본건 1차 입찰일('99. 4. 8) 이전부터 본건 공사현장 인근에 기시공 및 접속구간 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연고권 주장을 한 사실이 콜레터 배포 증거 등을 통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공동행위로 추정하였다.

디지털 경제

토막상식



디지털 기술이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까지 활용됨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거래 등 제반 경제 활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경제 시스템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 디지털 경제는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한정되며,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정부, 정부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간의 거래 방식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주체간 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직내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포함하며,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와 재화의 흐름도 디지털 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

지식 기반 경제

지식 및 정보의 효율적인 획득과 활용 능력을 경쟁력 기반으로 삼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쉽게 획득되고, 원활하게 유통되며, 체계적으로 축적되는 물리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에 더불어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제고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력의 지적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축적을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지식 기반 경제는 전혀 별개의 사실을 지칭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의 물리적, 문화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1999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3일(월), '99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한 '99년 4월 1일 이후 지금까지 '99년 12월중에 19개사가 감소한 것을 포함하여 총 42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58개사가 계열제외되어 116개사가 순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지정 당시의 686개에서 2000년 1월 3일 현재 570개사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5대 기업집단에서 69개사가, 6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47

개사가 각각 순감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수가 '98년 이후 계속 큰폭의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계열사 축소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상호출자금지와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등의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 '99년 12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99. 12.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0. 1. 3 현재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589	1	8	-	9	5	10	4	9	28	△19	570
1~5대	177	-	6	-	6	2	7	1	8	18	△12	165
6~30대	412	1	2	-	3	3	3	3	1	10	△ 7	405

◆ '99. 4. 1~2000. 1. 3 기간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99. 4. 1	편 입				제 외					증 감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청산	지분 매각	친족 분리	기타		
전 체	686	26	14	2	42	51	15	53	8	31	158	△116
1~5대	234	4	9	-	13	24	8	31	5	14	82	△ 69
6~30대	452	22	5	2	29	27	7	22	3	17	76	△ 47

◆ '99년 12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용 ◆

- ◎ 편입 : 9개사(지분취득 8, 회사설립 1)
- ◎ 제외 : 28개사(합병 5, 지분매각 10, 청산 4, 기타 9)

구 분	편 입			제 외			증 감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현 대	-	-	-	(주)금강기획	광고대행업	외국인 합작법인	△9
				(주)태화쇼핑	백화점	지분매각	
				현대정유(주)	석유경제 및 판매	외국인 합작법인	
				인천정유(주)	석유경제 및 판매	현대정유 자회사	
				현대방송(주)	방송업	청산종결	
				(주)캐피코	자동차부품제조	외국인 합작법인	
				현대세가 엔터테인먼트(주)	게임기기 개발	외국인 합작법인	
				(주)다이아몬드 베이츠	광고대행업	지분매각	
				한국철도차량(주)	철도차량 제조판매업	통합법인으로 공동최다출자자*	
대 우	-	-	-	한국전기초자(주)	전자부품 제조업	지분매각	△2
				한국철도차량(주)	철도차량 제조판매업	통합법인으로 공동최다출자자*	
삼 성	-	-	-	스템코(주)	반도체관련 TAPE 제조업	지분매각	△4
				(주)제일보겔	광고업	지분매각	
				(주)대경빌딩	부동산서비스	지분매각	
				삼성투자신탁 운용(주)	증권투자신탁업	삼성생명투신 운용(주)에 합병	
L G	데이콤(주)	유무선 기간통신사업	지분취득	-	-	-	6
	데이콤 인터넷서버(주)	통신장비 수출 입대행·판매	데이콤 자회사				

* 금번 시행령 개정('99. 12. 31)사항 반영

구분	편입			제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L G	데이콤시스템 테크놀로지(주)	정보처리 및 SI사업	데이콤 자회사	-	-	-	6
	(주)데이콤새틀라이트 멀티미디어시스템	위성방송서비스	데이콤 자회사	-	-	-	
	(주)코코넛	부가통신업	데이콤 자회사	-	-	-	
	(주)심마니	부가통신사업	데이콤 자회사	-	-	-	
S K	-	-	-	중부도시가스(주)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	지분매각	△3
	-	-	-	에스케이유통(주)	도매 및 상품증개	에스케이상사 (주)에 합병	
	-	-	-	양산국제물류(주)	보관·창고업	에스케이측 임원사임	
한진	(주)한국글로벌 로지스틱스시스템	컴퓨터시스템	회사설립	-	-	-	1
쌍용	-	-	-	쌍용정유(주)	원유정제처리업	지분매각	△2
	-	-	-	법아석유(주)	연료도매	쌍용정유자회사	
한화	-	-	-	한화경제연구원(주)	조사연구용역업	청산종결	△1
동아	-	-	-	동아생명보험(주)	생명보험업	지분소각	△1
두산	카스맥주(주)	맥주제조 및 판매	지분취득	-	-	-	2
	(주)두산콘프로덕츠 코리아	음식료품 제조	지분취득	-	-	-	
고합	-	-	-	고합뉴욕생명(주)	생명보험업	지분매각	△1
효성	-	-	-	(주)동광화성	프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	청산종결	△1
코오롱	-	-	-	강원정보기술(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지분매각	△3
	-	-	-	한국슈레다산업(주)	재생재료기공 처리업	채무보증관계 해소 등	
	-	-	-	한국케이디케이(주)	특수전선제조업	지분매각	
새한	-	-	-	새한건설(주)	건설업	(주)새한에 합병	△1
계	9			28			△19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이한억(李漢億, 前 하도급국장)
정책국장	박상조(朴相祚, 국방대학원 파견근무 해제)
소비자보호국장	이동욱(李東旭,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 해제)
하도급국장	박동식(朴東植, 前 기획관리관)
조사국장	안희원(安熙元, 前 소비자보호국장)
국외직무훈련 파견	임영철(任英喆, 前 정책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병배(金炳培, 前 조사국장)

부이사관 전보

심판관리관	임석규(任錫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파견근무 해제)
정책개발기획단장	허선(許宣, 세종연구소 파견근무 해제)
국방대학원 파견	이병주(李炳周, 前 총괄정책과장)
세종연구소 파견	김인준(金仁俊, 前 심판관리3담당관실)

서기관 전보

총괄정책과장	송학성(宋河盛, 前 국제업무1과장)
국제업무1과장	남경우(南徑祐)
심판관리3담당관	유재운(劉載云, 前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약관제도과장	김학연(金學炫,)
총괄정책과	신영선(辛榮善, 前 소비자기획과)
소비자기획과	서태종(徐太鐘, 국방대학원 파견근무 해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직대)	지철호(池澈湖, 前 총괄정책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직대)	김성만(金成晚, 前 국제업무1과)

사무관 전보

사무처	김영수(前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	----------------------